<간이투자설명서> 기준일: 2021.06.13

한화글로벌본드인컴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 [펀드코드 : CY229]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한화자산운용(주)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원금손실 위험, 자산가격 변동위험, 국가위험 등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한화글로벌본드인컴증권 자투자신탁H(채권-재간접형)**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자목적 및 전략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해외집합투자기구(투자신탁 자산총액의 70% 이상을 외화자산으로 투자)인 제이피모간펀드(JPMorgan Funds) – 인컴펀드(JPMorgan Funds-Income Fund)에 투자하여 투자대상 자산의 가치 상승 등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모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해외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채권 자산군내 다양한 섹터 및 국가에 걸쳐 투자함으로써 꾸준한 인컴을 추구하는 전략입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 섹터 및 국가간에 유연한 자산 배분을 통해 듀레이션을 조정하여 투자자들에게 꾸준하고 주기적인 배당 지급을 위한 인컴 수익을 추구합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채권-재간접형), 개방형(중도환매 가능),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단위: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단위:천원)				
	판매 수수료	총 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보수 ·비용	1년	2년	3년	5년	10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1.0% 이내	1.31	0.46	1.01	1.3189	234	374	522	840	1,7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없음	1.71	0.86	1.39	1.7193	176	361	556	974	2,217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 이내	1.08	0.23	0.64	1.0874	161	277	400	663	1,44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없음	1.28	0.43	0.90	1.2877	132	271	416	729	1,66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금액의 0.15% 이내	1.04	0.19	-	1.0447	107	220	338	592	1,347

*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합성 총보수비용[피투자펀드 보수 포함])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 **종류 A형과 종류 C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종류 A-e형과 종류 C-e형에 각각 투자할 경우 총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되는 경과시점**이나 추가납입, 보수 등의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세전기준)

종류	최초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19.12.28 ~ 20.12.27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19-12-16	0.65				0.30
비교지수(%)		0.00				0.00
수익률변동성(%)		12.70				12.58

* 비교지수 : 없음

*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 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단위: 개, 억원)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재간접형) (단위: %)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수	운용 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1년	최근2년	최근1년	최근2년	
오미선	1987년	책임(매니저)	-	-	-	-	24.28	12.25	-
이동욱	1992년	부책임(매니저)	2	69	7.88	-			1 년 1 개월

*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의미합니다.

*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 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table>
<tr><td>투자자
유의사항</td><td>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d></tr>
<tr><td>주요투자
위험</td><td>

<table>
<tr><th>구 분</th><th>투자위험의 주요 내용</th></tr>
<tr><td>원금손실
위험</td><td>이 투자신탁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td></tr>
<tr><td>자산가격
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글로벌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므로 투자된 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한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도 하락하게 됩니다.</td></tr>
<tr><td>환율변동위험</td><td>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은 원화로 표시되며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하위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함으로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목표 환헤지비율은 환헤지 가능 순자산의 70%이상이며 최대 100%수준입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헤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헤지비율은 이와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 규모가 작거나 빈번한 설정•해지 등의 경우에는 효율적 환헤지가 어려울 수 있으며 기준가격 산출에 있어 외국주식과 환헤지 목적으로 투자한 파생상품의 평가반영 시점이 상이한 경우 헤지효과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가치가 하락하는 경우(환율상승) 투자자들</td></tr>
</table>

</td></tr>
</table>

	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지만,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오히려 이러한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되기도 합니다. 또한,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거래 수수료 등의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 환위험 관리 1) 환헤지 여부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미국 달러화(USD)로 표시된 하위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서 외화표시자산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환헤지 전략을 사용합니다. 환헤지란 환율변동으로 인한 외화표시자산의 가치변동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전략입니다. 2) 환헤지 방법 및 목표 헤지비율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하위집합투자기구의 표시통화의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통화선물,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환위험을 헤지할 계획입니다. 환헤지 비율은 환헤지 가능한 순자산의 70%이상(최대 100% 수준) 실행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러나 국내 외환시장의 환경에 따라 유동성 부족, 거래상대방 부족,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변동, 외환관련 파생시장에 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헷지거래가 전액 또는 일부 실행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환헤지의 장단점 환헤지를 통해 예상치 못한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반면 자산 표시통화 대비 원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환차익을 취하지 못할 수 있으며, 환헤지 계약 만기 후 재계약(roll-over)시 시장환율 및 선물환 프리미엄 등에 따라 헤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환헤지비용 등 헤지비용은 환헤지 관련 파생상품의 계약환율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산출은 불가능 합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글로벌 채권 관련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국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제전망, 환율변동 등 해외경제지표의 변화,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재간접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주로 타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기 때문에 타 집합투자기구의 규약에서 정한 기간 내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할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투자신탁보다 환매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주요 투자대상인 타 집합투자증권은 개별적인 운용전략하에 운용되며 개별적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해 운용사의 정책 및 전략에 따라 그 세부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타 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기존 수익자 또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매입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이 투자신탁은 유사한 투자목적 또는 투자전략을 가진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추가로 투자하거나 대체하여 투자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 및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서 운용 등의 비용, 세금 등 다양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과보수로 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성과보수율과 계산방식 등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 투자신탁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매매 위험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 집합투자기구는 투자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수행할 수 있으며, 통상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높은 매매비용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시장수익률과 괴리가 클 수 있으므로, 기대 수준이 시장수익률 수준인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해산)의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 투자자의 동의 없이 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매입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D+2)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 **오후 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매입	**환매 방법**	· **오후 5시 이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4영업일(D+3)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8영업일(D+7)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 **오후 5시 경과 후에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청구일로부터 제5영업일(D+4)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을 적용. 제9영업일(D+8)에 관련 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
환매 수수료	없음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분** / **과세의 주요 내용** **집합투자기구**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익자** :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C-P(연금저축)/C-Pe(연금저축)/C-RP(퇴직연금)/C-RPe(퇴직연금)/S-P(연금저축) 클래스 가입자 : 소득세법 제20조의3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연금저축계좌 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 이하 '연금계좌'라 합니다)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 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한화자산운용㈜ (대표번호 : 02-6950-00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whafund.com)
모집기간	추가형 투자신탁으로 2019년 12월 16일부터 투자신탁의 해지일까지 / **모집·매출 총액** : 제한없음
효력 발생일	2021년 6월 30일 / **존속 기간** :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수수료 – 수수료 선취(A)** :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수수료 – 수수료 미징구(C)** :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

		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3개월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후취	집합투자증권 환매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무권유 저비용 (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납입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또는 법 시행령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금전신탁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 (f)	법에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보험계약,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기관투자자 및 기금이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개인연금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C-RP)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의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hanwhafund.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

· 수시공시 :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hanwhafund.com)